

제 622 호
1977. 9. 5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준
편집 : 문화공보관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전실
전화 75-5444

시 보

차 례

○ 규 칙

- 제 1717 호 : 서울특별시구출장소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3
- 제 1718 호 : 서울특별시의 구 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 3
- ✓ 제 1719 호 : 서울특별시 사무분장 규칙중 개정규칙 5

○ 고 시

- 제 321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10
- 제 322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 및 지적승인 10

○ 공 고

- 제 208 호 : 의료보호의원지정 11
- 제 209 호 : 환지계획변경인가 및 환지예정지지정공고 12
- 제 210 호 : 도시계획사업 (공원) 실시계획 공람공고 13
- 제 211 호 : 주택개량을위한 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 15

공람공고

(이면제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각증장.4항
시정부동간
시정31-2
강286제정문
문286제이리

서울특별시

2106

계	보도계장	공보계장	문화공보관	문화공보관	공람
			조용하	정현	공람 일

제313호 (성동구공고) : 동 공인신조(개각)공고	15
제 31호 (마포구공고)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제 회제 관제공무원 직인신조공고	17
제278호 (영등포공고) : 공인신조(개각)공고	18
◎ 사 명	22

규 칙

서울특별시구출장소 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7년 9월 5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717 호

서울특별시구출장소사무분장
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구출장소 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제 2 항 제 2 호 가목중 "주민세 및 목적세"를 "주민세, 사업소세 및 목적세"로 하고 동항제 3 호 가목중 "유흥음식세"를 "등록세"로 한다.

제 6 조 중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산업과에 산업제, 녹지제와 보호제를 두고, 산업제장은 지방행정구사 지방농림기사 또는 지방축산기사로, 녹지제장 및 보호제장은 지방농림기사로 보한다.

제 6 조 제 2 항 본문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중 제 4 호 및 제 5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 8 조 제 1 항중 "운영, 양서출장소의 도시정비과"를 "운영출장소의

도시정비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 구사무분장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7년 9월 5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718 호

서울특별시의구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의 구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제 2 항중 제 1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계제

가. 국공유 보통재산의 관리 및 처분

나. 재산수입의 수납

다. 행정재산의 총괄

라. 국내 다른과 및 과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 5 조 제 2 항중 제 1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세무제 1 계

가. 구세입총괄 및 천계

나. 구의세입금징수보고 및 과년도
도채납시세 정리보고

다. 과소관 시세의 징수결정 및
세입금 출납

라. 과소관 시세의 가산금 및
독촉결의

마. 과소관 시세의 징수부 소인
관리와 집계

바. 과소관 시세의 과오납결의와
환불 및 충당

사. 과소관 시세의 공과금 교부
청구와 징수촉탁

아. 압류재산의 공매 및 환가등
의 종결

자. 과소관 세무의징수 및 채납
처분에 관한 민원처리와 징수
유예

차. 과소관 세무의 과년도 채납
시세의 징수와 압류 및 징수
촉탁

카. 과년도 시세의 과오납금 및
가산금 결의

타. 과년도 시세의 불납결손처리

파. 과년도 채납시세에 관한 징
수촉탁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하. 파비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
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 제1항중 "과징제1제, 과징제
2제와 정리제"를 "정리제, 과징제
1제와 과징제 2제"로 한다.

제6조 제2항중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동호중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여 아목을 삭제한다.

가. 원년도 등록세, 사업소세, 도축세
마권세, 면허세 및 주민세의 세원
조사 및 부과징수, 다만 사업소세
와 주민세는 과징제 2제에서 주관
하고 기타 세목은 과징제 1제에서
주관한다.

제6조 제2항중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동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 리 제

가. 과소관 시세징수 결정 및 세
입금 출납

나. 과소관 시세의 가산금 및
독촉결의

다. 과소관 시세의 징수부 소인
관리와 집계

라. 과소관 시세의 과오납 결의와
환불 및 충당

마. 과소관 시세의 공과금 교부
청구와 징수촉탁

바. 압류재산의 공매 및 환가등
의 합의

사. 과소관 세목시세의 징수 및

<p>채납처분에 관한 민원처리와 징수 유예</p> <p>아. 과소판 세목의 과년도 채납시세의 징수와 압류 및 징수촉탁자. 과년도 시세의 과오납금 및 가산금 합의</p> <p>차. 과년도 시세의 불납결손 처리</p> <p>카. 과년도 채납시세에 관한 징수 촉탁 및 제 2차납세의무자 지정</p> <p>타. 관내 다른계의 주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제 9 조 중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① 위생과에 식품위생계와 환경위생계를 두고, 식품위생계장은 지방행정주사 지방수의기사 또는 지방보건기사로 환경위생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보건기사로 보한다.</p> <p>부 칙</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p> <p>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p> <p>1977년 9월 5일</p> <p>◎ 서울특별시규칙 제 1719 호</p> <p>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p>	<p>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 7 조 제 2 항 제 1 호 중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사목을 아목으로 하며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마. 보고문서의 통계와 각종 통계부의 조정 및 통계</p> <p>사. 행정자료실 운영</p> <p>제 8 조 제 2 항 제 1 호 중 나목을 삭제한다.</p> <p>제 11 조 제 3 항 중 제 1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가. 공 보 계</p> <p>가. 문화공보행정의 종합계획</p> <p>나. 공연장 설치허가 및 지도</p> <p>다. 영사기사 면허에 관한 사항</p> <p>라. 전시 홍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p> <p>마. 영화교실 운영</p> <p>바. 사회단체등록 및 지도</p> <p>사. 수도행정자문위원회 (문화공보분과위원회) 운영</p> <p>아. 반공단체의 지도와 계몽</p> <p>자. 서울특별시보 발간</p> <p>차. 관내 다른계의 주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제 11 조 제 3 항 제 4 호 중 마목을 삭제</p>
--	--

제한다.

제 11 조 제 3 항 제 3 호 중 차목을 다
음과 같이 하고 타목을 하목으로
하며 동호에 타목 및 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시립교향악단, 시립국악관현악단,
시립 소년소녀합창단과 새마을
합창단 운영

타. 광고영화 검열
파. 시민위안 행사

제 19 조 중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민과에 문서통제제, 민원 1 제와
민원 2 제를 두고, 문서통제제장과
민원 1 제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
원 2 제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전기과로 보한다.

제 19 조 제 2 항 중 제 2 호 "민원처리제
" 민원 1 제 " 로 하고, 동항에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민원 2 제

- 가. 특허관계 원산지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 나. 수출용 원자재 소요량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제 21 조 제 2 항 제 1 호 중 마목 및
아목 내지 차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 21 조의 2 제 2 항 제 2 호 가목 중
"유용음식세" 를 "등록세, 사업소
세" 로 한다.

제 2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3 조 (관재과) ① 관재과에 재산관리
제, 재산처분제와 공유재산제를 두고
제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관재과의 제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기업회제로
거래되는 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제외한다.

1. 재산관리제

- 가. 공유재산의 총괄관리 및 조정
- 나. 공유재산의 취득, 차입 (도시
계획사업 시행으로 인한 경우
는 제외)

다. 시유창고외 관리

- 라. 공유재산 심의회 운영에 관
한 사항
- 마. 과내 다른제의 주관에 속하
지 아니하는 사항

2. 재산처분제

- 가. 잡종재산의 매부 및 처분
- 나. 잡종재산처분에 따른 지적
정리 및 등기이전
- 다. 재산수입에 관한 사항

<p>3. 국유재산제</p> <p>가. 관리 이관된 국유재산의 총괄</p> <p>나. 관리 이관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p> <p>다. 관리 이관된 국유재산 처분에 따른 지적정리 및 등기이전</p> <p>제 27 조 제 1 항중 "구조제와 직업안정제" "구조제, 직업안정제와 의로보험제"로 하고 제 2 항에 제 5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5. 의로보험제</p> <p>가. 의로보험제도의 종합계획 수립과 종합조정</p> <p>나. 의로보험조합의 인가 및 해산</p> <p>다. 의로보험조합 예산 및 결산 승인</p> <p>라. 요양위급 기관의 지정승인 및 취소명령</p> <p>마. 의로보험조합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 내부 조사</p> <p>바. 기타 의로보험 조합운영에 관한 지도감독</p> <p>제 34 조 및 제 35 조의 2 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 34 조 (공업과) ①공업과에 공정계, 기업지도계와 표준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p> <p>②공업과 계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p>	<p>와 같다.</p> <p>1. 공정계</p> <p>가. 공업지역조정 및 개발</p> <p>나. 조선에 관한 사항</p> <p>다. 제조업에 관한 사항 (기계공업 제외)</p> <p>라. 전자공업등록에 관한 사항</p> <p>마. 광업에 관한 사항</p> <p>바. 공장기본조사 및 현황파악</p> <p>사. 산업동원 자원의 조사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p> <p>아. 동원업체 동원물자비축 및 기술자양성과 기술개발에 관한사항</p> <p>자.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2. 기업지도계</p> <p>가. 수출진흥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p> <p>나. 수출통제와 기타 수출업무</p> <p>다. 공장 새마을 운동</p> <p>라. 중소기업 육성계획의 수립</p> <p>마. 중소기업자금 지원</p> <p>바. 중소기업 협동조합설립인가 및 지도감독</p> <p>사. 기계공업에 관한 사항</p> <p>3. 표 준 계</p> <p>가. 표시허가업체의 표시변경등에</p>
--	---

<p>관한처분 및 사후관리</p> <p>나. 일반공산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p> <p>다. 공업표준화 사업의 연구</p> <p>제 35 조의 2 (도시가스과) ① 도시가스과에 석유가스계, 시설 1 계와 시설 2 계를 두고 석유가스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 1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화공기과로 시설 2 계장은 지방화공기과 또는 지방토목기과로 보한다.</p> <p>② 도시가스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석유가스계</p> <p>가. 도시가스사업소 지도감독(기술분야 제외)</p> <p>나. 고압가스수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p> <p>다. 석유류 수급에 관한 사항</p> <p>라.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2. 시설 1 계</p> <p>가. 도시가스사업소 기술분야 지도감독</p> <p>나. 엘피기 가스, 집단 공급시설에</p>	<p>관한사항</p> <p>다. 지역냉난방계획 및 시공감독</p> <p>라. 연료개량에 관한 사항</p> <p>3. 시설 2 계</p> <p>가. 저유시설 건설계획</p> <p>나. 저유시설의 설계 및 시공감독</p> <p>제 68 조 제 1 항중 " 운수행정계와 운수기획계 " 를 " 운수행정계, 운수기획계와 교통시설계 " 로 하고 동조제 2 항에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3. 교통시설계</p> <p>가. 교통시설의 기획에 관한 사항</p> <p>나. 교통안내 표지 (교통안전표지 제외) 의 설치 및 유지관리</p> <p>다. 교통신호기 (전자감응식) 의 계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p> <p>제 70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 70 조 (운수 2 과) ① 운수과에 운영계, 화물계, 지도계와 정비계를 두고, 운영계장, 화물계장과 지도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비계장은 기계기과 또는 지방기계기과로 보한다.</p>
--	--

②운수 2 과의 제별 본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 영 계

가. 자동차등록에 관한 계획 및 조정

나. 자동차등록사업소 지도감독

다. 중고 자동차 매매업소의 인허가 및 지도감독

라. 자동차 번호판 제작업소의 지도감독

마.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화 물 계

가. 화물·용달자동차운송사업의 수송계획수립 및 시행

나. 화물·용달자동차운송사업의 인·허가

다. 화물·용달자동차운송사업조합 및 운송사업체의 지도감독

라. 화물·용달자동차운송의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사항

마. 기타화물·용달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바. 창고업에 관한 사항

사. 화물터미널 및 화물운송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아. 자동차 운송알선사업에 관한 사항

자. 화물공급 기준제정 및 조정

3. 지 도 계

가. 자동차 운송사업체 종사원의 취업관리 및 교양훈련과 표창

나. 차량의 운행지도 감독 및 서비스 개선

다. 법령위반차량의 행정처분

라. 교통민원신고센터의 종합관리 및 운영

마. 노선업종 자동차의 운행중 및 보험에 관한 사항

바. 배연차량의 단속

4. 경 비 계

가. 보안기준 및 구조기준에 관한 사항

나. 검사장의 지도 감독

다. 차량정비사업의 계획 및 조정

라. 차량정비에 관한 기술상의 지도감독

마. 자동차 정비사업체의 인·허가 및 지도감독

바. 자동차 정비사의 자격시험

사. 자동차 정비사 양성학원의 지정 및 지도감독

아. 정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신고

자.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기록부의 관리

<p>차. 정비사업진흥회의 지도감독 부 차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 <p>고 시</p> </div> <p>◎ 서울특별시고시제 321 호</p> <p>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도</p>	<p>시계획법 12조 및 제13조규정과 건설부고시 제41호(77.3.16)의 권한위임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과와 종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7. 9. 5</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p> <p>가. 도로지적승인조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10%;">등급</th> <th style="width: 10%;">류별</th> <th style="width: 10%;">폭원</th> <th style="width: 10%;">연장</th> <th style="width: 10%;">기 점</th> <th style="width: 10%;">종 점</th> </tr> </thead> <tbody> <tr> <td>신설</td> <td>소로</td> <td>3</td> <td>6m</td> <td>140m</td> <td>명륜2가 8-1</td> <td>명륜2가 43-1</td> </tr> <tr> <td>"</td> <td>"</td> <td>3</td> <td>6m</td> <td>70m</td> <td>" 8-15</td> <td>" 8-7</td> </tr> </tbody> </table>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신설	소로	3	6m	140m	명륜2가 8-1	명륜2가 43-1	"	"	3	6m	70m	" 8-15	" 8-7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신설	소로	3	6m	140m	명륜2가 8-1	명륜2가 43-1																					
"	"	3	6m	70m	" 8-15	" 8-7																					
<p>※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p>																											
<p>◎ 서울특별시고시제 322 호</p> <p>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및 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12조 및 제13조 규정 과 건설부고시 제41호(77.3.16)</p>	<p>의 권한위임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과와 종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7. 9. 5</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p>																										

가. 도로변경 및 지적승인조서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3	6m	130m	인의동28-14	인의동28-6	도로확장																						
변경	"	1	10m	130m	"	"																							
<p>※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공 고</div> <p>◎서울특별시공고 제 208 호</p> <p style="text-align: center;">의료보호위원회지정</p> </div> <div style="width: 45%;"> <p>생활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생활보호대상자의 진료술 담당할 의료기관을 지정하였거 다음과 같이 공고함.</p> <p style="text-align: right;">1977년 9월</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p> </div> </div> <p>1. 의료기관지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진료지구명</th> <th rowspan="2">진료대상지역</th> <th colspan="2">1 차 진 료</th> </tr> <tr> <th>의료기관명칭</th> <th>소재지</th> </tr> </thead> <tbody> <tr> <td>서울특별시</td> <td>강서구: 화곡본동·발산동</td> <td>강서구보건소</td> <td>화곡동1의103</td> </tr> </tbody> </table> <p>2. 진료대상지역조정</p> <p>가. 제1차진료기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진료지구명</th> <th rowspan="2">진료대상지역</th> <th colspan="2">1 차 진 료</th> </tr> <tr> <th>의료기관명칭</th> <th>소재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서울특별시</td> <td rowspan="2">강서구: 열창동, 본동 동촌동, 가양동 화곡1·2동 신월동 신정1·2·3동</td> <td>서울정형외과의원</td> <td>동촌동 71-1</td> </tr> <tr> <td>기독의원</td> <td>화곡동 377-7</td> </tr> </tbody> </table>								진료지구명	진료대상지역	1 차 진 료		의료기관명칭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본동·발산동	강서구보건소	화곡동1의103	진료지구명	진료대상지역	1 차 진 료		의료기관명칭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열창동, 본동 동촌동, 가양동 화곡1·2동 신월동 신정1·2·3동	서울정형외과의원	동촌동 71-1	기독의원	화곡동 377-7
진료지구명	진료대상지역	1 차 진 료																											
		의료기관명칭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본동·발산동	강서구보건소	화곡동1의103																										
진료지구명	진료대상지역	1 차 진 료																											
		의료기관명칭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열창동, 본동 동촌동, 가양동 화곡1·2동 신월동 신정1·2·3동	서울정형외과의원	동촌동 71-1																										
		기독의원	화곡동 377-7																										

진료지구명	진료대상지역	1 차 진료	
		의료기관명칭	소재지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방화 1, 2 동 과해동 성동구: 강남구신천동에서 성동구구의동으로 편입된지역	김포중앙의원	공항동 45-99
		동부의원	화양동 24-17

나. 제 2 차 진료기관

진료지구명	진료대상지역	2 차 진료	
		의료기관명칭	소재지
서울시	강서구 전지역 (염창동의 15개동) 성동구: 강남구신천동에서 성동구구의동으로 편입된지역	시립영등포병원	영등포동 2 가 222
		한강성심병원	영등포동 94-200
		시립강남병원	삼성동 63
		한양대부속병원	행당동산 8-2

◎서울특별시 공고제 209 호

환지계획변경인가및
환지에정지지정공고

1. 서울특별시공고 제 193 호 (77.8.17) 로 환지계획 변경 공람공고한 영등 제 2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에정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5 조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 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에정지를 변경 지

정하였기 공고한다.

2. 환지에정지 변경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강남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3. 본 공고사항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통지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77. 9.

서울특별시장

<p><환지에정지변경지정내역> 가. 사업명 : 영동제2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 나. 변경면적 : 38,733.4 평 다. 변경위치 : 강남구압구정동 165 번지 의 105 필지</p> <p>◎ 서울특별시 공고제 210 호</p> <p>도시계획 사업 (공원) 실시계획 공람 공고</p> <p>1. 서울특별시고시 제 306 호 (77.8.27) 로 도시계획시설 (공원) 실효신설 및 지적승인 고시된바 있는 중구 양림동 4-1 소재 양림공원에 대하 여 공원시설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 일 간 일반의 공람에 공하고저 공고 함.</p> <p>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 나 미수명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 로 갈음함.</p> <p>3. 관계도서는 중구청 산업과에 비</p>	<p>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p>1977. 9. 5. 서울특별시장</p> <p><공 략 개 요></p> <p>1. 사업장위치 : 중구양림동 4-1 의 19 필지</p> <p>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양림아동공 원조성</p> <p>3. 사업의 규모 : 1,696 평 (513명)</p> <p>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중구청장)</p> <p>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1977.9.1 ~ 1977.12.31</p> <p>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로서</p> <p>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3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p>
---	---

(토지)

이 동 지 조 서

토지소재		이 동 건				소 유 자	
읍면	리 동	지 번	지 목	지 적	등급	주 소	성 명
서울	쌍 립	4-1	대	46.3	74	쌍 립 동 177	김 용 성
	"	7-1	"	123.8	73	" 8	권 상 한
	"	8-1	"	76.9	76	" 8	"
	광 회동1가	239-1	"	20	73	광 회동 1가 38	일 본 인
	"	239-2	"	30	73	"	"
	"	240-1	"	17	73	광 회동 1가 240	이 원 영
	"	240-3	"	45	73	"	"
	"	240-4	"	27.7	73	"	"
	"	240-5	"	23	73	"	"
	"	240-6	"	22	73	"	"
	"	240-7	"	5.3	73	"	"
	"	241	"	32	72	광 회동 1가 241	신 하 기
	"	242	"	33	72	" 242	손 완 식
	"	254-1	"	13.6	71	" 254-1	일 본 인
	"	254-2	"	33.4	71	"	"
	"	255	"	42		국 유	
	"	255-1	"	10.2		"	
	"	255-2	"	4		"	
	"	252-1	"	2.4	73	광 회동 1가 252	박 원 형
	"	236	"	24	73	" 238	박 금 회

(가 옥) 이 동 지 조 서									
토지소재		이 동 건				소 읍 자			비 고
읍면	리 동	지번	지목	면적	등급	주 소	성 명		
서울	광희동 1가	241	가옥	9.		광희동 1가 241	신 하 기		
		240	"	29		" 240	이 원 영		
		239	"	12		수표동 38	일 본 인		
		238	"	15		광희동 1가	박 금 희		
		8-1	"	75		상림동 8	권 상 한		
	7-1	"	32		"	"			
		상림동							

◎ 서울특별시공고제 211 호

주택개발을위한재개발사업관리
 처분계획공람공고

1. 서울시고시제 212 호 및 213 호 (76.9.4)로 주택개발을 위한 재개발사업실시계획 인가된 호상 1. 신당 2. 아현 2 구역에 대하여
2. 도시재개발법 제 42 조와 동법제 65 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제 41 조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30 일간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개발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본 공고에 대한 서류송달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본공고로 갈음한다.

1977.9.5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성동구공고제 313 호

동공인신조(계각)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산하 마장동장의 3 계동 등의 신설 및 합병공인의 마멸로 폐기하고 신조(계각)하여 사용토록 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함.

1977. 8.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1. 공인의명칭 : 성동구마장동장의 3 계동장의 인및외계공인
2. 사용일시 : 1977.9.1 09:00
3. 공인의인명 :

마 장 동	직 인	계 인	본임 물품출납원인
	전도자금출납원인	도금경비출납원인	본임 수입금출납원인
광 장 동	직 인	계 인	본임 물품출납원인
	전도자금출납원인	도금경비출납원인	본임 수입금출납원인

성 수 2 가 계 3 동	직 인	계 인	본임분출출납원인
			
	전도자금출납원인	도금경비출납원인	분임수입금출납원인
			
본 임 분 출 출 납 원 인			구 의 동 장 직 인
도시경비과	새마을과	재 무 과	
			
<p>○서울특별시마포구공고제 31 호</p> <p>의도보호기금특별회계회계관계 공무원직인신조공고</p> <p>의도보호기금특별회계시행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을 신조하</p>		<p>있기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9조 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함.</p> <p>1977. .</p> <p style="text-align: right;">마 포 구 청 장</p>	

아 래

- 1. 공 인 명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마포구출납명령관인
- 2. 공인사용일자 : 77. 8. 1
- 3. 공인의 모형



- 1. 공 인 명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마포구출납공무원인
- 2. 공인사용일자 : 77. 8. 1
- 3. 공인의 모형



◎ 영등포구공고제 278 호
공인신조(개각)공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분동되
는 동의 적인 및 일부 동 마편
공인을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함을 공
고함





















1977. 8. 31





















영등포구청장 김택수









- 1. 사용년월일 : 77.9.1 09:00
- 2. 공인 의 인 영

개 봉 제 1 동	동 장	계 인	도급경비지출원인	분입수입금 출납원인	전도자금 출납원인

동명	동 장	계 인	본임수입금 출납원인	전도자금 출납원인	도급경비 지출원인
개 봉 제 2 동					
독 산 제 1 동					
독 산 제 2 동					
구 로 제 5 동					

동명	동 장	계 인	도급경비 지출원인	본입수입금 출납원인	전도자금 출납원인
구 로 제 6 동					
신 갈 제 7 동					
가 리 봉 제 1 동					
가 리 봉 제 2 동					

동명	동장	제인	도급경비 지출원인	전도자금 출납원인	분임수입금 출납원인
대림계 1동					
대림계 2동					
신도림동					
신정계 3동					

<p>도림제 2 동장 개인</p>  	<p>양정제 1 동장 개인</p>  
<p>문래제 1 동장 개인</p>  	<p>당산제 2 동장 개인</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사 령</div> <p>© 1977. 9. 5</p> <p style="text-align: right;">김 춘 석</p> <p>행정사무관시보에 임함. 4 호봉을 급함 성동구 수습행정관에 포함.</p> <p style="text-align: right;">오 동 환</p> <p>행정사무관시보에 임함 1 호봉을 급함. 성북구 수습행정관에 포함.</p>	<p style="text-align: right;">장 일 형</p> <p>행정사무관시보에 임함 4 호봉을 급함 도봉구 수습행정관에 포함</p> <p style="text-align: right;">권 선 택</p> <p>행정사무관시보에 임함 1 호봉을 급함. 서대문구 수습행정관에 포함.</p> <p style="text-align: right;">한 현 규</p> <p>행정사무관시보에 임함. 1 호봉을 급함. 마포구 수습행정관에 포함.</p>

<p>장 세 진 (3유상당)에 임함. 13호봉을 급함. 비상계획보좌관실운영담당에 보함 1977.9.1 대 통 령</p>	<p>시민회관 지방행정 박사 박 위 민 주 사 시민회관 관리계장 직무대리는 명함.</p>
<p>서 울 특 별 시 장</p>	